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CONTENTS

Ⅰ.안전기준 준수 제도 소개 ····· 04

Ⅱ.품목별 안전 요건 및 표시사항

1. 가죽제품 ····· 11
2. 합성수지제품 ····· 13
3. 가구 ····· 15
4. 간이 빨래걸이 ····· 18
5. 선글라스 ····· 20
6. 안경테 ····· 23
7. 텐트 ····· 24
8. 고령자용 신발 ····· 26
9. 고령자용 지팡이 ····· 28
10.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 31
11. 고령자용 목욕의자 ····· 32
12. 고령자 위치추적기 ····· 34
13. 물안경 ····· 35
14. 반사 안전조끼 ····· 37
15. 스테인레스 수세미 ····· 41
16.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42
17. 침대 매트리스 ····· 43
18. 우산 및 양산 ····· 45
19. 휴대용 경보기 ····· 47
20. 접촉성 금속 장신구 ····· 48
21. 벽지 및 종이장판지 ····· 49
22. 가정용 섬유제품 ····· 51
23. 양탄자 ····· 54

Ⅲ. 자주하는 질의 답변 ····· 56

Ⅳ. 시험기관 안내 ····· 64

Ⅴ. 시험지원 안내 ····· 68

1. 안전기준 준수 제도 소개

1. 안전관리 법 제도 일반

- 정부는 '67년 「공산품 품질관리법」, '74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1.2월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 · 시행하여 국내에서 제조 · 수입 ·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수거 등 조치 및 그 이행점검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한편, '15.6월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제품 규정을 별도 분리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비하였고, '17.1월에는 유사성이 높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제품의 안전관리

1) 제품출시 前(사전 시험 · 인증 의무 부여)

-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④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 등 4가지로 안전관리 품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 · 수입업자가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전에 반드시 시험 ·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마크 부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④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은 사전 시험 · 인증대상에서 제외(KC마크 미부착)하고 있습니다.

〈품목 구분 및 사전 시험 ·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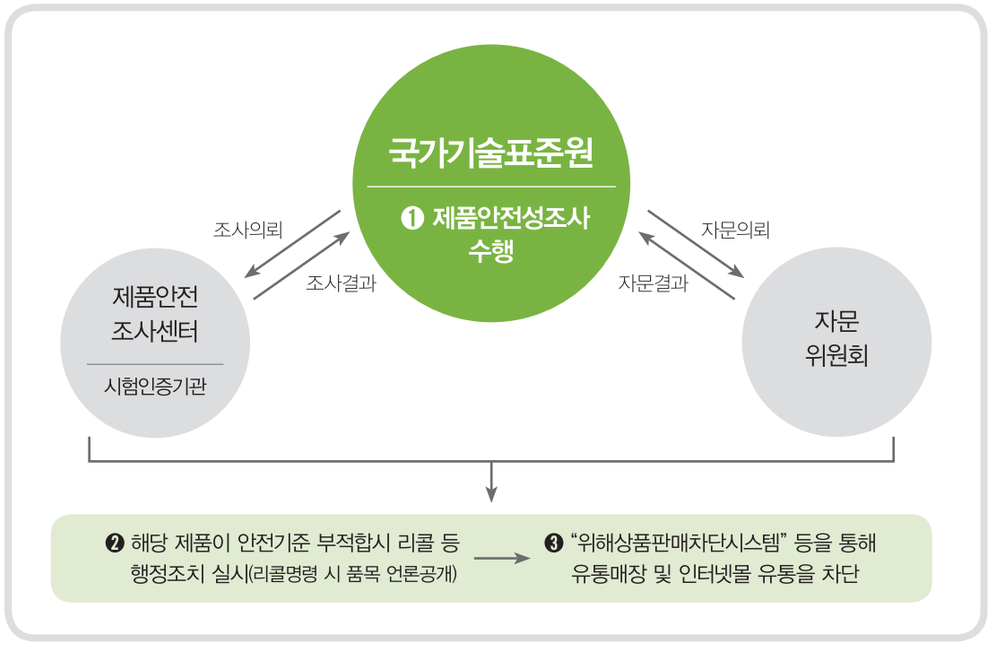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위해 정도
①안전인증 (46품목)	제조·수입 업자 → 신청 → 안전인증기관 (공장 심사, 제품 검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인증번호 → 제품 판매	높음 ↓ 낮음
②안전확인 (107품목)	제조·수입 업자 → 신청 → 시험검사기관 (제품 검사), 안전인증기관 (신고서류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제품 판매	
③공급자적합성 (102품목)	제조·수입 업자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제품 검사) → 제품 판매	
④안전기준준수 (23품목)	제조·수입 업자 → 자율시험 (제품 검사) → 제품 판매	

※ 법적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2) 제품출시 後(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 국내 제조 ·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등(이하 ‘리콜’)의 명령/권고 조치를 통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표시사항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내용은 개선조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및 후속조치 절차〉



※ 안전성조사 및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내지제11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6조, 제9조, 제10조)

3) 처벌 규정(정부의 행정처분 불이행시 등)

- 정부는 위법성이 확인되어 적발된 해당 사업자에게 처분한 리콜명령/권고 또는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별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제도(23개 생활용품)

1) 안전기준 준수 제도의 도입

-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분류된 ‘38개 생활용품’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23개 품목’을 별도 분리하여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준수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전안법 제28조 내지 제31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품목 분류 현황〉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8) →	공급자 적합성확인 (15)	폴리염화비닐관,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 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동차용 휴대용 잭, 물탱크
	안전기준 준수대상 (23)	가죽제품,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합성수지제품(’20.10.22부터 포함)

주) 근거: 전안법 시행규칙 제3조7항 관련 (별표6)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된 23개 품목은 정부가 정한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전 시험 의무를 면제하고, KC마크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을 제조 · 수입하는 사업자는 유해물질 허용치, 성능기준 등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KC마크 이외의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품의 시중 유통이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제도(요약)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 · 수입 · 판매를 허용(KC마크는 붙이지 않음)
 * 단, 유해물질 허용치 충족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함

2)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안전기준 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인증 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하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 시험기관에서 자율인증 획득, ④해외에서 받은 제품의 인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 열람 방법: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 한편,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 ·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부의 안전성 조사과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처벌 규정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3개) 사업자의 경우도, 정부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리콜 조치후에도 해당 제품을 유통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의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리콜 이행점검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3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리콜명령/권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중지 등(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49조제1항제34호**
	판매중지 등으로는 위해 방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판매중지 등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8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9호**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3개 품목)

분류	품목
화학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20.10.22. 시행)
생활	3.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4. 간이 빨래걸이 5. 선글라스 6. 안경테 7. 텐트 8. 고령자용 신발 9. 고령자용 지팡이 10.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1. 고령자용 목욕의자 12. 고령자 위치추적기 13. 물안경 14. 반사 안전조끼 15. 스테인레스 수세미 16.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7. 침대 매트리스 18. 우산 및 양산 19. 휴대용 경보기 20. 접촉성 금속 장신구 21.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 포함)
섬유	22. 가정용 섬유제품 23. 양탄자

안전기준 확인 방법

- Ⅱ. 품목별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만 정리한 것으로, 시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안전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표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 안전기준 검색(안전기준 준수)

II. 품목별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1. 가죽제품

※정의 및 세부품목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에 적용합니다.

- **천연가죽** :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하이드(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양, 뱀 등 작은 동물의 가죽)
 - ①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니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m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인조가죽** :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 · 화학적 처리를 한 것.
 - ① 코팅가죽 :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② 라미네이팅가죽 : 두 개 이상의 가죽 층 또는 한 개의 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은 두께는 0.15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재조합가죽 :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본딩가죽, 그라인딩 가죽, 분쇄가죽 등).
 - ④ 합성가죽 : 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 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합성피혁 원단
- **천연모피** :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

* 피부 접촉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가정용 섬유제품 참조).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m^2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합니다.



1 안전요건

•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신발류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유해물질명 \ 제품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mg/kg)	5.0 이하		
6가 크로뮴(mg/kg)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아릴아민(mg/kg)	30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 (TBT(tributyltin))(mg/kg)	1.0 이하		
니켈(㎍/㎠/week)	0.5 이하		

2 표시사항

• 품명은 가죽제품이라 표시합니다.

• 개별제품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는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릅니다.

• 수입자명은 수입품에 한하여 표시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경우는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합니다.

• 제조국명의 경우는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 가죽제품 표시사항

1. 품명 : 가죽제품
2. 재료의 종류 : 겉감(천연가죽(소가죽)), 안감(인조가죽)
3. 치수(cm) :
4. 제조연월 : 2020. 08
5. 제조자명 : ㈜ OO산업
6. 수입자명 :
7.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8. 제조국명 : 한국
9. 취급상 주의사항

2. 합성수지제품

※정의 및 세부품목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 중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으로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을 말합니다.

* 「식품위생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합성수지 제품의 세부품목은 크게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로 분류합니다.

구 분	종 류
매트류(주1)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등
신발류(주1)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기타류(주1)	휴대폰케이스(주2), 짐볼, 이어폰류(주3),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

* 주1)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
* 주2) 휴대폰 겉에 씌워서 본체를 보호하고 미관 등을 꾸미기 위한 용도의 제품
* 주3) 이어폰류(헤드폰, 헤드셋 등 포함) 중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한함



1 안전요건

• 기계적 · 물리적 특성

기계적 · 물리적 특성	안전요건
겉모양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을 것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할 것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을 것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할 것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할 것
	터짐, 잔금이 없을 것

•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		허 용 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300mg/kg 이하
	총 카드뮴(Cd)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wt% 이하
	DBP	
	BB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비고 1) 납이 페인트 및 코팅표면에 들어간 경우는 90mg/kg 이하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표의 내용을 한글로 표시합니다.

예시 : 합성수지제품 표시사항

1. 모델명 : 가나다–000
2. 재질 : PE(폴리에틸렌)
3. 치수(해당 제품에 한함)
4. 제조연월 : 2020. 06
5. 제조자명 : ㈜OO산업
6. 수입자명 : –
7.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8. 제조국명 : 한국
9. 사용상 주의사항

* 주) 소형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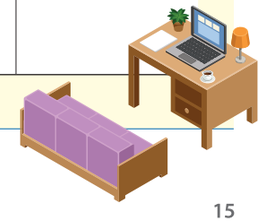
※정의 및 세부품목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주)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소품형 가구(예 : 연필꽂이, 휴지통 등), 소형 가구(예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품목별 적용범위〉

품목	적용범위	비고
책상 및 테이블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식탁, 교자상 등에 적용한다.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회전/비회전/ 접이식의자, 스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납가구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커, 선반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침대	침대란 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분할 침대, 2단 침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씽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장대, 청소용구함,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안전요건

•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표1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L)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데시케이터법

* 데시케이터법 : 유리 데시케이터를 이용하며, 규정된 온도에서 데시케이터 내에 일정 부피의 탈염수를 넣고 시험편을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탈염수에 흡수된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구하여 측정합니다.

〈표2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2 · h)	0.12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톨루엔 방출량 (㎎/m^2 · h)	0.080 이하일 것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m^2 · h)	4 이하일 것	

* 소형챔버법 :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구성된 내부용적 20L 챔버에 가구재료, 건축재료 등을 설치해 표면에서 방산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표면을 부위에서 채취해 측정합니다.

• 소파 제품의 가죽 소재는 가죽 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표3 가죽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적용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300 이하	안전기준 부속서3(가죽제품)
염소화페놀류(PCP)(㎎/㎏)(1)(2)		5.0 이하	
6가 크로뮴(㎎/㎏)(2)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이하	
아릴아민(㎎/㎏)(3)		30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4)	TBT(tributyltin)	1.0 이하	

* 표3은 소파제품의 가죽소재에 한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며,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예시 : 가구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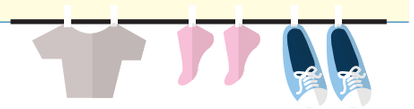
1. 품 명 : 책상
2. 외형치수(mm) : 2,200 x 1,500 x 1,300
3. 구조부재 : 스테인레스
4. 표면가공 : 피니싱 포일
5. 제조연월 : 2020. 05
6. 제조자명 : ㈜OO산업
7. 수입자명 : –
8.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9. 제조국명 : 한국
10. 취급상 주의사항

* 책상, 테이블을 예시로 작성하였으며 의자, 수납가구, 침대, 매트리스 쿠션재, 싱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는 표시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4. 간이 빨래걸이

※정의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하며, 이불을 말리기 위한 것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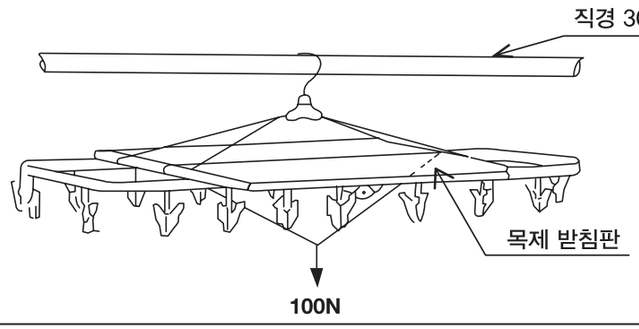


1 안전요건

• 내하중 시험을 했을 때 끊어짐 균열발생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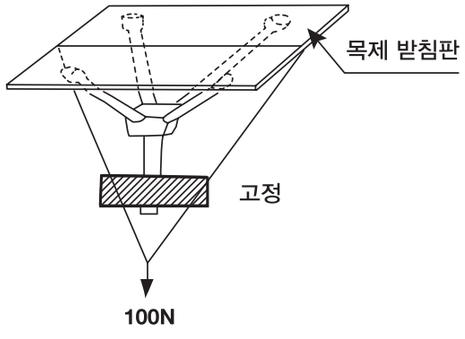
① 고리의 내하중 시험

시험방법	직경 30mm의 파이프에 고리를 당겨 건 다음에 고리에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N의 하중을 1분간 가했을 때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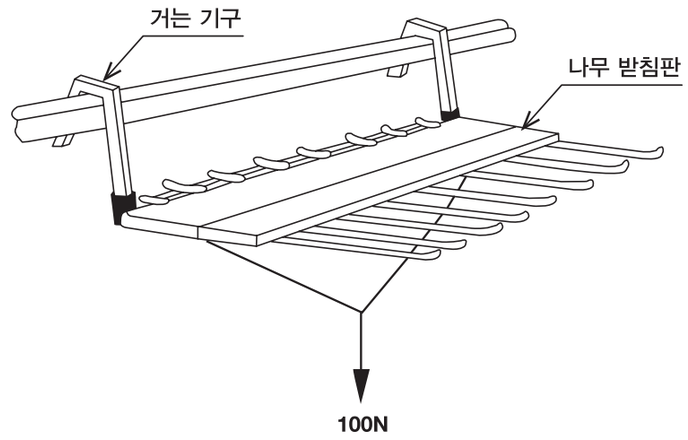
② 스탠드의 내하중 시험

시험방법	후레임을 고정하고 스탠드 등의 선단에 100N의 하중을 1분간 가한 후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③ 거는 기구의 내하중 시험

시험방법	거는 기구의 형상에 일치하는 파이프에 건 다음, 거는 기구에서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N의 하중을 1분간 가했을 때 육안,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간이 빨래걸이 표시사항

1. 치수 : 30mm x 55mm x 65mm (폭 x 길이 x 높이)
2. 견딜 수 있는 하중 : 10kg
3. 제조국명 : 중국
4. 제조연월 : 2020. 05
5. 제조자명 : ㈜OO산업
6. 수입자명 : ㈜OO상사
7.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으면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항을 표시합니다.

(1) 사용 전에 제품 각부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2) 세탁물은 균형에 맞게 말릴 것

(3) 옥외에서 사용할 때 강풍이 불 때는 실내에 넣을 것

(4) 사용 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5. 선글라스

※정의

옥외에서의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 선글라스를 말합니다.



* 주) 광색필터, 편광필터 등 특수 유형 필터와 아래 적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일광욕실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인공 광원으로부터의 복사선에 대한 보호용안경류
 ② 특정 스포츠용 보안경(스키 고글이나 기타 유형의 것)
 ③ 의료용으로 처방된 태양광 복사선 감쇠를 위한 선글라스
 ④ 부분 일식 또는 금환식 관찰과 같이 태양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품

1 안전요건

• 광선차단율

소비자라벨	기술적 라벨	요구사항		
		자외선 스펙트럼 영역		가시선 스펙트럼 영역
설명 라벨	필터 범주	최대 태양광 UV-B 투과율 τ_{SUVB} (280~315)nm	최대 태양광 UV-A 투과율 τ_{SUVA} (315~380)nm	시감투과율 범위 τ_V (380~780)nm
옅은색 선글라스	0	$0.05\tau_V$	τ_V	$\tau_V > 80\%$
	1	$0.05\tau_V$	τ_V	$43\% < \tau_V \leq 80\%$
일반 선글라스	2	1.0% 절대값 또는 $0.05\tau_V$ 중 더 높은 값 적용	$0.5\tau_V$	$18\% < \tau_V \leq 43\%$
	3	1.0% 절대값	$0.5\tau_V$	$8\% < \tau_V \leq 18\%$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4	1.0% 절대값	1.0% 절대값 또는 $0.25\tau_V$ 중 더 높은 값 적용	$3\% < \tau_V \leq 8\%$

• 니켈 용출량(금속제에 한함)은 일주일간의 연속시험 기간동안 0.5㎍/㎠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낱개 포장에는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합니다.

• 꼬리표에는 고리가 떨어지지 않고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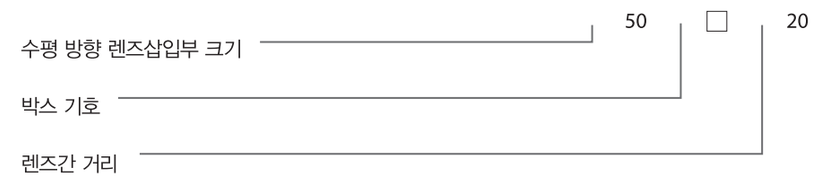
• 그림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별도 용지에 기입하여도 됩니다.

예시 : 선글라스 표시사항

1. 재질 : 테(플라스틱), 렌즈(유리)
2. 광선특성 : 1(하단 표를 별도 용지로 표기할 것)
3. 제조국명 : 중국
4. 제조연월 : 2020. 05
5. 제조자명 : ㈜OO산업
6. 수입자명 : ㈜OO상사
7.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8. 사용상 주의사항
 (1) 태양 직접 관찰용이 아닙니다.
 (2) 일광욕실에서와 같은 인공 광원에 대한 보호용이 아닙니다.
 (3) 표3에 주어진 것과 같은 기호 및 또는 문구형태로 표시한 필터 범주에 대한 설명. 기호의 최소 높이는 5mm이어야 합니다.
 (4) 관련이 있는 경우, 만약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선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다면 취급 및 세정 관련 설명과 세정에 부적합한 세정제 목록
 (5) 필터가 운전용과 필터 범주 4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 이라는 경고를 그림 1을 참고하여 기호 형태나 문구로 표시합니다. 기호의 최소 높이는 5mm이어야 합니다.

• 선글라스 안경테에는 아래 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각인, 인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표시하며 꼬리표 사용은 불허합니다.

표시	위치
제조자 또는 공급자	규정사항 없음
모델명	규정사항 없음
색상	규정사항 없음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렌즈간 거리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다리의 전체 길이	다리
전면부의 규정된 치수 표시 순서 :	



〈표3 필터 범주의 기호 및 문구〉

필터 범주 시감투과율범위	설명	용도	기호
0 τ_V 〉 80%	옅은색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감소	IEC 60417-5955
1 43% 〈τ_V ≤ 80%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	KS S ISO 7000-2948
2 18% 〈 τ_V ≤ 43%	일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양호한 보호	KS S ISO 7000-2949
3 8% 〈 τ_V ≤ 18%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0
4 3% 〈 τ_V ≤ 8%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 감소 매우 우수	강한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매우 우수한 보호. 즉, 바다, 설원, 높은 산이나 사막	KS S ISO 7000-2951

6. 안경테

※적용범위

안경테(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 포함)에 대하여 규정하며,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안경테(산업용 안경테 등)는 제외합니다.

1 안전요건

• 니켈 용출량(금속제에 한함)은 일주일간의 연속시험 기간동안 0.5㎍/㎠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낱개 포장에는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합니다.

• 꼬리표에는 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합니다.

예시 : 안경테 표시사항

1. 재질 : 플라스틱
2. 제조국명 : 중국
3. 제조연월 : 2020. 05
4. 제조자명 : ㈜OO산업
5. 수입자명 : ㈜OO상사
6.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 안경테에는 아래 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각인, 인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표시하며 꼬리표 사용은 불허합니다.

표시	위치
제조자 또는 공급자	규정사항 없음
모델명	규정사항 없음
색상	규정사항 없음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렌즈간 거리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다리의 전체 길이	다리
전면부의 규정된 치수 표시 순서 :	

50 □ 20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박스 기호

렌즈간 거리

7. 텐트

※정의 및 세부품목

취침용, 주거용, 여행용, 야영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에 대해 적용합니다.

(1) **취침용 텐트**(sleeping tent)(S형)

취침용으로 사용되는 텐트로서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① st등급(표준 중량형 텐트) : 중량이 2kg 이상인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

② l등급(경량형 텐트) : 중량이 2kg 이하인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

(2) **여행용 텐트**(touring tent)(T형) : 설치하고 해체하기에 용이한 주거용 텐트

(3) **주거용 텐트**(residential tent)(R형) : 장기간 설치하기에 적당한 주거용 텐트

(4) **에이형텐트**(A Type Tent) : 벽있음, 벽없음으로 구분합니다.

(5) **돔형텐트**(Dome Tent) : 사각형, 육각형으로 구분 예시) 돔형텐트 4각형

(6) **반원통형텐트**(Tunnel Tent) : 지붕이 반원 형태

(7) **가옥형텐트**(Cabin Tent) : 바깥텐트와 속텐트로 나눠지며 집의 형태를 띄움

(8) **절충형텐트**(A Type Tent) : 두 개 이상의 조합 예시)에이형텐트＋캐빈형텐트

* 상기 종류와 다른 모델 및 종류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제시된 사양에 따릅니다.



1 안전요건

• 방염성능 : 방염제품으로 표시된 텐트는 소방청 고시에 따른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 가능합니다.

예시 : 텐트 표시사항

1. 모델명 : ABC-텐트
2. 재질 : 폴대-화이버글라스, 플라이, 이너, 바닥, 벽-폴리에스터
3. 제조연월 : 2020. 05
4. 제조자명 : ㈜OO산업
5. 수입자명 : ㈜OO상사
6.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7. 제조국명 : 중국
8. 방염제품 : 난연성
9. 사용상 주의사항
10. 화재예방의 주의표시

•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표시는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위치에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 문구를 텐트 내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① 주의문구의 넓이는 7cm×15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화재예방” 문구는 붉은색 문자로 본문구(흰색바탕에 검은색)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 재 예 방

•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식적인 규칙을 따를 것
• 벽, 지붕 및 커튼 근처에서 요리, 가열 및 점화 기구를 놓지 말 것
• 항상 이들 기구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
• 어린이를 점화기구 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할 것
•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둘 것
• 화재방지 도구가 있는 위치를 숙지할 것

8. 고령자용 신발

※정의 및 세부품목

일상생활에서 고령자가 보행할 때 신는 일반 보행용 신발로 벨크로(한쪽에 갈고리, 다른 한쪽에 걸림고리가 있어 서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제품), 지퍼, 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고령자용으로 고안된 신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신발 종류

① 고무 신발 :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고무를 사용한 신발

② 염화비닐 신발 :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염화비닐을 사용한 신발

③ 가죽 신발 :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가죽을 사용한 신발

④ 발포 신발 :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발포를 사용한 신발



1 안전요건

• 미끄럼 저항, 안감, 갑피, 안창, 깔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 무게등은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항목			고무신발	염화비닐신발	가죽신발	발포신발
미끄럼 저항	건식(마찰계수)		0.8 이상			
	습식(마찰계수)		0.6 이상			
안감	폼알데하이드(mg/kg)		75 미만			
	pH 값		4.0 이상 7.5 이하			
갑피	인장 시험	인장강도(MPa)	10.0 이상	–	15.0 이상	–
		신장률(%)	360 이상	–	40 이상	–
	인열강도(kN/m)		39.23 이상	0.98 이상	–	–
	수축률(%)		–	3 이하	3 이하	3 이하
	굴절시험		끊어지지 않을 것			
	재봉사(N/가닥)		19.61 이상			
안창/깔개	pH 값		4.0 이상 7.5 이하			
치수	신발높이(mm)		45 이상			
	신발너비(mm)		73 이상			
	신발볼 둘레(mm)		211 이상			
	굽 높이(mm)		55 이하			
무게(g)			편족 420 이하			
갑피 겉창 접착 박리강도 (N/2.5cm)			80 이상			

• 부속품의 성능

① 지퍼 :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벨크로 :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밴드 : 늘어나는 정도가 250% 이상이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 고령자용 신발의 라벨 또는 택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합니다.

예시 : 고령자용 신발 표시사항

1. 모델명 : 고령자용 신발 03
2. 재료의 종류 : 가죽
2. 치수 : 255mm
3. 제조연월 : 2020. 05
4. 제조자명 : ㈜OO산업
5. 수입자명 : –
6.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7. 제조국명 : 한국
8. 사용상 주의사항
 • 천연가죽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젖었을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솔로 잘 닦을 것
 – 보존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9. 소비자 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제품문의처 : 02–123–0123
10. 취급설명서(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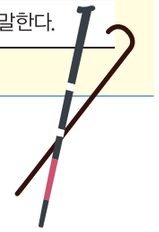
* 합성가죽 및 기타 가죽제품의 경우 천연가죽과 다른 제품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 부속서 내용 반드시 참조).

9. 고령자용 지팡이

※정의 및 세부품목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종 류	설 명
일자형 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 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를 말한다.
조절식 지팡이	지대부분을 슬라이드 시켜 금속제의 버튼 등을 지주의 구멍에 맞추어서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조립식 지팡이	지대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나사 등 느슨한 방지기구에 의해 조립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다족 지팡이	손잡이에 의지하여 사용되는 삼족 또는 삼족 이상으로 구성된 지팡이를 말한다.



1 안전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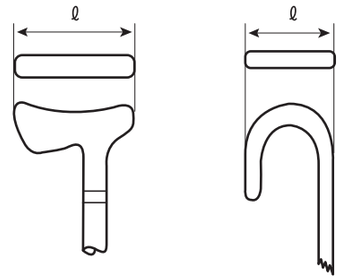
• 겉모양 및 구조, 성능, 재료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겉모양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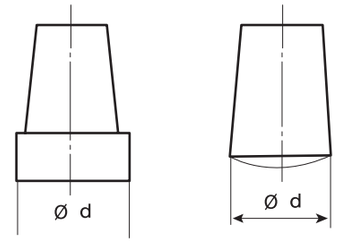
겉모양	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바리 등이 없어야 한다. 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표면에 도장, 도금 등이 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표면에 노출, 벗겨짐, 녹 및 두드러진 얼룩이 없어야 한다.
구조	1. 잡는 부분은 잡기 쉬운 형태이고 손잡이와 지대는 확실히 고정 되어져 있어야 한다. 2. 접지부분에는 안정, 마루의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 중 쉽게 벗겨지지 않는 지팡이 끝 고무가 붙어져 있고 지대의 끝과 지팡이 끝 고무와의 맞춤부분에는 걸림쇠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한다. 3.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은 마루 등에 흡착되지 않도록 형성 되어져 있어야 한다. 4. 조절식지팡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고정 가능하여야 한다. 5. 접이식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 중 용이하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6. 접이식지팡이의 고무로프는 형상이 동일한 끈 형태의 고무가 여러다발로 구성되어져 외곽을 천이나 수지 등으로 피복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립식지팡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구조(치수)

구조(치수)	손잡이 투영길이	100mm 이상
	지팡이 끝 고무 접지면의 직경	25mm 이상
	걸림쇠 밑의 지팡이 끝 고무두께	6mm 이상



〈그림 1〉 손잡이 투영길이



〈그림 2〉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 직경

③ 성능

성능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였을 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 량은 10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시험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압축하중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m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견딤하중	다족지팡이는 견딤하중 시험을 하였을 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러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재료

재료	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이하 이어야 한다. 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KS M ISO 7619–1 의 타입A 듀로미터에 의한 경도가 50 이상 70 이하이어야 한다.

* 주) 타입A 듀로미터는 고무경도 측정 장비를 뜻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예시 : 고령자용지팡이 표시사항

1. 모델명 : Korea 01 경보기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10.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정의

고령자용 휠체어 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안전요건

• 겉모양, 접촉면, 도장면, 테이블, 부속품 및 부분품 등에 적용합니다.

항 목	기 준
겉모양	다듬질은 양호하고 흠, 고장,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접촉면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고 모서리 부분은 매끄러워야 한다.
도장면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테이블	테이블 윗면은 평활하고 장식구슬 등의 작은 물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테이블은 사용 중에 쉽게 접혀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부속품 및 부분품	테이블 등의 부속품 및 부분품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예시 :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표시사항

1. 모델명 : 고령자 휠체어 테이블 005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치수 : 90cm x 90cm x 80cm
8. 사용상 주의사항

11. 고령자용 목욕의자

※정의 및 세부품목

자세유지가 가능한 고령자가 일반가정 등 욕실 내에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목욕의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종 류	설 명
팔걸이 목욕의자	팔걸이와 등받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는 목욕의자를 말한다.
팔걸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가 부착되어 있고 팔걸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등받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바퀴형 팔걸이 목욕의자	바퀴가 있는 팔걸이 목욕의자를 말한다.
팔걸이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팔걸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등받이가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등받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1 안전요건

• 성능은 내구성, 미끄럼 저항, 금속재료의 내식성에 만족하여야 하며 전방 안전성등 이하 세부항목과 치수, 최대 하중은 참고기준으로 합니다.

항 목		기 준
성능	좌면 내구성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 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등받이 내구성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미끄럼 저항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시험하였을 때 5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금속재료의 내식성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전방 안정성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측방 안정성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측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팔걸이 부착 측방안정성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후방 안정성	등받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무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등받이 후방 안정성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좌면 정적강도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등받이 정적강도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정적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팔걸이 정적 수평력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 수평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팔걸이 정적 수직력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 수직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내낙하 충격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치수	좌면 높이	최소 330 이상, 최대 550 이하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좌면의 최소길이	350mm 이상으로 한다.
	등판의 최소길이	340mm로 한다.
	좌면 앞끝부분의 반지름	30mm~50mm로 한다.
	등판의 최소 반지름	300mm로 한다.
	좌면의 각도	0° 이상 4° 이하로 한다(목욕의자에 앉았을 때 고령자의 등쪽 좌면이 반대쪽 좌면보다 낮게 위치해야 한다).
	등판의 기울기	95°~106°로 한다.
	바퀴 직경 (바퀴형 목욕의자)	75mm 이상이어야 한다.
	바퀴 폭 (바퀴형 목욕의자)	28m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하중		목욕의자 다리 부분의 프레임은 제조 및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에서 제시한 최대 사용자 체중의 무게를 가할 때 굽힘, 압축 및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표시사항에 최대 하중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2 표시사항

•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합니다. **특히 제조연월은 눈에 띄는 곳에 큰 글씨로 표시합니다.**

* 목욕의자는 높이를 조절했을 때 최소높이와 최고높이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고령자용 목욕의자 표시사항

1. 모델명 : 고령자 휠체어 테이블 005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최대 사용자 체중 : 150kg
8. 목욕의자 최소높이 / 최고높이 : 80cm / 120cm

12. 고령자 위치추적기

※정의 및 세부품목

실외에서 고령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위치 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추적기의 종류는

① GPS 방식 위치추적기, ② 이동통신 겸용 방식 위치추적기가 있습니다.



1 안전요건

• 겉모양, 동작, 유해물질, 반복자유낙하 등에 적용합니다.

항 목	기 준
겉모양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이 없어야 한다.
동작	긴급한 상황 발생시를 고려하여 반드시 경고 버튼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유해물질	제품 케이스는 납, 수은, 6가 크로뮴,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내 중량기준(wt)으로 각각 0.1%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미만이어야 한다. * 제품중 외부 외함에만 적용하고, PBB, PBDE의 경우 고분자 물질에만 적용한다.
반복자유낙하	자유낙하 시험을 하였을때는 성능에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 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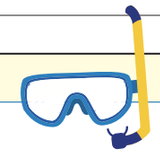
1. 모델명 : 고령자 위치추적기 006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OO상사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미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치수(가로 x 세로 x 높이) : 70 x 80 x 85(단위 : mm)

13. 물안경

※정의 및 세부품목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렌즈 수	종류
일안식	통으로 된 한 개의 렌즈를 가진 것
이안식	양눈에 각각 렌즈를 가진 것
다안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렌즈를 더 가진 것



* 주) 잠수(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합니다.

1 안전요건

항목	기준
겉모양	• 마무리와 거스러미, 흠, 이물, 오염, 상처 등의 현저한 결점이 없을 것
구 조	• 몸체가 일체 성형되어 있는 것은 연결 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외 제품은 몸체, 연결고리, 쿠션, 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연결고리 및 밴드는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할 것 •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을 것 • 투시부(렌즈면)는 현저한 굴곡 현상이나 눈에 해로운 어른거림 등이 없이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금속과 유리 부품은 사용하지 말 것
재 료	•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 탄성 등이 적합할 것
투시부(렌즈부)의 내충격성	• 강구 낙하충격에 의해 파손, 균열이 없을 것
몸체의 내하중	• 588N 하중을 가했을 때 3조각 이상의 파손 또는 균열 등이 없을 것
수밀성	• 물안경의 몸체와 투시부와의 사이에는 누수 현상이 없을 것
밴드의 반복하중	•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을 것
굴절력	• 렌즈부의 굴절력은 0±0.125D(디옵터)이어야 함
평행도	• 렌즈부의 평행도는 0.167△(프리즘 디옵터) 이하이어야 함
밴드의 오존노화	• 밴드는 규정시간 연속하여 시험편을 폭로시킨 후 시험조에서 꺼내어 균열상태가 균열수가 적고 균열의 크기 및 깊이가 3mm 이하이어야 함

〈밴드의 오존노화 관련설명〉

균열 수	균열의 크기 및 깊이
A : 균열수 적음 B : 균열수 많음 C : 균열수 아주많음	1.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10배 확대경으로 확인되는 것 2.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 3. 균열이 깊고 비교적 큰 것(1mm 미만) 4. 균열이 깊고 큰 것(1mm 이상 3mm 미만) 5. 3mm 이상의 균열 또는 절단될 정도로 심한 것

* 주) A-3 (균열수 적음, 균열이 깊고 비교적 큰 것(1mm 미만)) 이하이어야 기준에 적합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합니다.

예시 : 물안경 표시사항

1. 사용연령 : 14세이상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14. 반사 안전조끼

※정의 및 종류

어두운 곳이나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재료 및 재귀반사재료를 사용한 안전조끼를 말합니다.

• 재귀반사재 또는 혼합성능재의 면적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합니다.

(단위 : m^2)

구 분	1종	2종	3종
재귀반사재	0.1 이상	0.13 이상	0.2 이상
혼합성능재	0.2 이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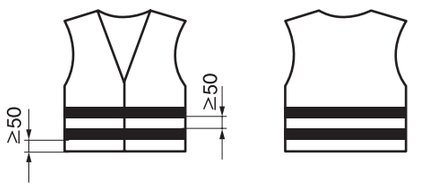
1 안전요건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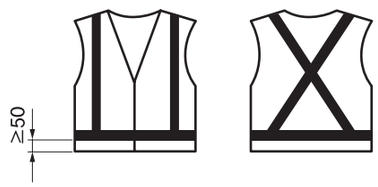
① 바탕재는 상복부를 수평 또는 전체적으로 둘러싸야 합니다.

② 재귀반사재의 폭은 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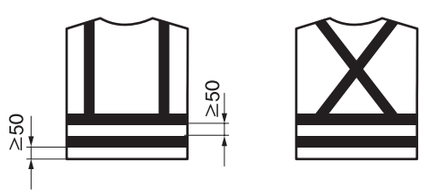
③ 반사 안전조끼는 아래 그림(1–1, 1–2, 1–3)중 어느 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림 1–1〉 안전조끼(수평띠, mm)



〈그림1–2〉 안전조끼(어깨띠, mm)



〈그림1–3〉 안전조끼(2줄 수평어깨띠, mm)

• 봉제

① 바느질은 균일하며, 봉탈, 재봉선 벗어남 및 솔기 벌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② 재봉선의 굽음, 땅김, 주름, 바늘자국, 이어박기 불량 등은 품위를 저하시킬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강재는 필요한 곳에 보강 박기, 보강재료 붙임, 기타 방법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색도

– 일광 시험후 바탕재 및 혼합성능재의 색도와 휘도율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바탕재의 색도〉

색상 (형광)	색도좌표		휘도율 (βmin)
	x	y	
Yellow	0.387, 0.356, 0.398, 0.460	0.610, 0.494, 0.452, 0.540	0.76
Orange–Red	0.610, 0.544, 0.579, 0.655	0.390, 0.376, 0.341, 0.344	0.40
Red	0.655, 0.579, 0.606, 0.690	0.344, 0.341, 0.314, 0.310	0.25

〈혼합 성능재의 색도〉

색상 (형광)	색도좌표		휘도율 (βmin)
	x	y	
Yellow	0.387, 0.356, 0.398, 0.460	0.610, 0.494, 0.452, 0.540	0.70
Orange–Red	0.610, 0.535, 0.570, 0.655	0.390, 0.375, 0.340, 0.344	0.40
Red	0.655, 0.570, 0.595, 0.690	0.344, 0.340, 0.315, 0.310	0.25

•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

– 섬유재질은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하며, 조성률은 표시치의 ±5%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은 섬유재질 및 조성률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시험은 KS K 0210에 따릅니다.

* KS 기준은 이나라 표준인증(WWW.E–KS.KR) 의 "국가표준"에서 검색할수 있습니다.

• 바탕재의 염색견뢰도

① 마찰견뢰도 마찰견뢰도(건, 습)는 4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0650에 따릅니다.

② 땀견뢰도 땀견뢰도(산성 및 알칼리성)의 변퇴색은 4급 이상, 오염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ISO 105–E04에 따릅니다.

③ 세탁, 드라이클리닝, 염소표백 및 핫프레싱견뢰도 제품취급표시에 따라 아래 표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염색 견뢰도〉

취급주의 공정	기준(급)	시험방법
가정용 및 상용 세탁	변퇴색 : 4 이상 오 염 : 3 이상	KS K ISO 105–C02
드라이클리닝	변퇴색 : 4 이상 오 염 : 4 이상	KS K ISO 105–D01
염소표백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N01
핫프레싱	변퇴색 : 4 이상 오 염 : 4 이상	KS K ISO 105–X11

• 바탕재의 치수변화율

① 바탕재의 치수변화율는 길이, 폭 모두 3%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시험편의 준비, 표시 및 측정은 KS K ISO 5077에 따릅니다.

③ 세탁은 KS K ISO 5077, 드라이클리닝은 KS K ISO 3175–2에 따르며 시험조건은 제품취급표시를 적용하며, 시험횟수는 5회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실시하며, 제품취급표시에서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는 세탁만 실시합니다.

• 바탕재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직물	편성물	도포원단	
인장강도(N)	경사 850 위사 650	–	–	KS K 0521 (60mm×300mm)
	–	–	450	KS K 0521 (60mm×300mm)
파열강도(kpa)	–	1000	–	KS K ISO 13938–1
인열강도(N)	–	–	25	KS K 0536
내수도(mmH2O)	–	–	800	KS K ISO 811

• 재귀반사성능

– 재귀반사계수(R′)는 KS A 3507 8.3항에 따라 100mm×100mm 크기의 사각형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아래 표의 재귀반사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m²)〉

조사각 / 관측각	5°	20°	30°	40°
12′	330	290	180	65
20′	250	200	170	60
1°	25	15	12	10
1°30′	10	7	5	4

〈1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m²)〉

관측각 \ 조사각	5°	20°	30°	40°
12′	250	220	135	50
20′	120	100	75	30
1°	25	15	12	10
1°30′	10	7	5	4

〈혼합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m²)〉

관측각 \ 조사각	5°	20°	30°	40°
12′	65	50	20	5
20′	25	20	5	1.75
1°	5	4	3	1
1°30′	1.5	1	1	0.5

• 전처리 후 재귀반사성능

① 개별성능재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100 cd/lx·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혼합성능재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따라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30 cd/lx·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 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그림문자는 그림 10mm 이상, 숫자 2mm 이상으로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 반사 안전조끼 표시사항

1. 모델명/종류 : 반사안전조끼/재귀반사재(3종)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섬유의 조성 및 치수 : 개별성능재, 800mm x 760mm
8. 그림문자 및 취급상 주의표시

15. 스테인레스 수세미

※정의

주방, 욕실, 식당 및 산업계 등에서 사용하도록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수세미에 대해 적용합니다.



1 안전요건

항목	기준
겉모양	절단면이 매끄럽고 날카롭지 않을 것
재질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사용
납 함유량(%)	0.3 이하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합니다.

예시 : 스테인레스 수세미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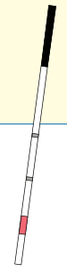
1. 모델명 : 가나다 – 000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스테인레스의 종류 : 오스테나이크계
7.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① 코팅용기 등 흠집이 나기 쉬운 곳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시간 사용시 철이 끊어져 조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후 깨끗이 헹구어 건조시켜 주시면 위생적입니다.
④ 영 · 유아 등 어린이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정의

독립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활필수용품인 흰색 지팡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안전요건

• 안전요건은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은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손잡이 위쪽으로 휴대와 보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줄과 고리가 연결 되어져 있어야 한다.

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팡이 표면에 재반사시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접이식의 경우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⑦ 지팡이의 색상은 전방 보행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흰색이어야 하며 무게는 170g~240g 이내이어야 한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점자 및 한글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예시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표시사항

1. 모델명 : 시각_장애인용_지팡이_01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사용상 주의사항

17. 침대 매트리스

※정의 및 세부품목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를 말합니다.

* 물 또는 공기침대 매트리스는 제외합니다.
* 또한, 병원 등 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침대의 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및 아동용 이단침대의 매트리스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세부품목

종 류	제 품 명
스프링 매트리스	강제스프링,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
폼 매트리스	폼라바(스폰지고무), 우레탄폼, 천연라텍스, 합성라텍스
섬유 매트리스	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등



1 안전요건

항 목	단위	기 준		
겉모양	–	겉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실용상 지장이 있는 색빠짐, 퇴색 등의 염려가 없고 또한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		
		봉제는 땀간격이 일정하고 실끊어짐, 실느슨함, 실풀림, 봉탈, 재봉선의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치 수 (제작 치수)	mm	치 수		제작 허용차
		나 비	1000 미만	±20
			1000 이상 1500 미만	+25 –20
			1500 이상	+30 –20
		길 이		+30 –20
		두 께	180 미만	±18
			180 이상	±20
재 료	–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매트리스의 내용물은 스프링 뚤림 방지 및 인장력을 위하여 스폰지, 팜, 휄트, 척추보호대 등 기본 사양 품목이 들어가야 한다(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항 목		단위	기 준
내 구 성		㎜	간격의 양 d_1, d_2, d_3가 모두 40 이하일 것
		–	겉감의 닳음, 풀림, 찢어짐 등이 없을 것
			내용물의 이동, 뭉침, 빠짐 등이 없을 것
			용수철의 끊어짐, 빠짐 등이 없을 것
수직하중		㎜	휨의 증가량 D1 ≤ 45 D2 ≥ 5
인장강도(경, 위)		N	295 이상일 것
마찰 견뢰도	건식	급	4 이상일 것
	습식		3 이상일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mg/kg	75 이하일 것
가연성 – 발화여부		–	발화되어서는 안됨
혼용률		–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내구성 및 수직하중은 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매트리스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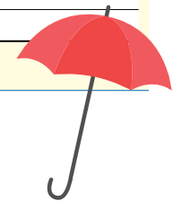
1. 모델명 : 매트리스_20201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치수 : 2,700mm x 2800mm x 360mm
8. 재생 내장재 사용여부 : 재생 스프링 사용

18. 우산 및 양산

※정의 및 세부품목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 제품류에 해당하며,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은 제외합니다.

구 분	종 류
일반식	수동우산(장우산 포함), 수동양산
	자동우산(장우산 포함), 자동양산
접이식	수동우산, 수동양산
	자동우산, 자동양산



1 안전요건

• 우산 및 양산의 안전요건은 부품 조립강도, 굽힘강도, 구조 안전성, 자외선(UV–R) 차단율, 원단의 이음 등 모든 항목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안전요건		기준
부품 조립 강도	손잡이와 대의 강도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균열·파손·이완 등이 없어야 함

구 분		기준치 (N)
일반식	수 동	380 이상
	자 동	420 이상
접이식	수 동	250 이상
	자 동	420 이상

안전요건		기준
부품 조립 강도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우산 끝살과 천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	견고하게 조립되어 분리되지 않아야 함 다만, 접이식(수동) 우산 및 양산은 손잡이의 조립강도 안전요건에서 제외함
굽힘강도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함
구조 안전성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하며, 손잡이 또는 캡의 윗부분 등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 또는 뾰족한 부분이 없는 구조이어야 함
자외선(UV–R) 차단율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음

종 류	자외선 차단율 (%)
골프용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90 이상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85 이상

안전요건		기준
원단의 이음		각 부분의 바느질은 상하 봉사의 장력이 양호해야 함 땀 수는 기계박음의 경우는 2.54cm당 8땀 이상으로 함 땀의 뜀, 땀의 터짐, 봉제선 굽음 및 심한 봉제 주름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함 봉사는 사용 원단, 사용 부위에 적정하고 이색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함(장식사 제외)

* 골프용 양산 및 우산 · 양산 겸용제품은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제품을 말하며 면, 마가 40% 이상 함유된 원단, 자수원단, 번아웃 원단 등은 표 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자외선 차단율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스티커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 우산 및 양산 표시사항

1. 모델명 : ABC-100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원단의 조성 및 자외선 차단율 : polyster 100%, 99% 차단
7. 사용상 주의사항

19. 휴대용 경보기

※정의

개인이 휴대하여 위협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음압을 발생하는 1차, 2차 전지를 발생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안전요건

항목	기준
초기작동	정상작동 할 것
외관	사용상 해로운 결점 없을 것
작동스위치 조작성	어린이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음압 레벨(dB)	85 이상 일 것
음색(Hz)	3.5~30 일 것
연속사용시간	20분 이상 연속 경보음 발생할 것
반복 자유낙하	이상없이 정상 작동 할 것
동작 스위치의 내구성	(2000회 작동 후) 사용상에 지장이 없을 것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또는 라벨 등을 부착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음압 레벨에 따른 청력 이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휴대용 경보기 표시사항

1. 제조자명 : ㈜OO산업
2. 수입자명 : ㈜OO상사
3.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4. 제조국명 : 중국
5. 제조연월 : 2020. 08
6. 음압레벨 : 120dB
8. 연속사용시간 : 30min
9. 경고

20. 접촉성 금속 장신구

※정의 및 세부품목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합니다.

- 종류는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안전요건

- 겉모양 : 연마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은 눈에 뜨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되어야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합니다.
- 니켈 용출량은 일주일간의 연속시험 기간동안 0.5㎍/㎠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접촉성 금속 장신구 표시사항

1. 사용연령 : 14세이상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1.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정의

벽지란 실내의 벽 · 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접착 시트(인테리어 필름)를 포함합니다.

종이장판지란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안전요건

- 벽지

항목	기준
폼알데하이드방출량(mg/L)	2 이하
내 황 화 성	4급 이상
난 연 성	• 잔염시간 3초 이내 • 잔진시간 5초 이내 • 탄화면적 30㎠ 이내 • 탄화길이 20㎝ 이내 • 접염횟수 3회 이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 주) ① 제품의 길이 및 나비방향을 세로, 가로라 합니다.
② 내황화성과 난연성 항목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및 난연성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③ 내황화성을 필요로하는 경우 시험을 하고 4급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있음”이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잔염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합니다.
⑤ 잔진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합니다.
⑥ 접염횟수란 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합니다.

- 종이 장판지

항목	기준
알칼리 추출분(%)	40 이상

2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벽지는 재료의 종류, 치수(평판제품: 가로(cm) x 세로(cm), 롤 제품: 길이(m) x 폭(cm)), 매수,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장판지는 치수(mmxmm), 평량(g/m^2), 매수(매), 사용상 주의사항은 대해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시1 : 벽지 표시사항

1. 모델명 : 가나다–123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한국
6. 제조연월 : 2020. 08
7. 내황화성 유무
8. 난연성 유무
9. 재료의 종류 : 종이제
10. 치수 : 평판제품(가로(cm)x세로(cm))
11. 매수 : 00매
12. 사용상 주의사항

예시2 : 종이 장판지 표시사항

1. 모델명 : 가나다–000
2. 제조자명 : ㈜OO산업
3. 수입자명 : ㈜OO상사
4.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5. 제조국명 : 중국
6. 제조연월 : 2020.08
7. 치수 : (mm x mm)
8. 평량 : (g/m^2)
9. 매수 : 00매
10. 사용상 주의사항

22. 가정용 섬유제품

※정의 및 세부품목

만 14세 이상의 섬유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에 적용하며, 맞춤복은 제외합니다.

- 기본 용어

구분	설명
조성섬유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
혼용률	조성섬유가 2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되었을 때, 각 조성 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 등의 취급 방법들 알리기 위한 표시
방염제품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

- 세부

구분	설명	제품군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합성수지 신발, 단 가죽제품은 제외) 등
침구류	잠을 자는데 이용하는 제품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 미만, 면적 1㎡ 이상은 양탄자에 해당됨) 등
기타 제품류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등



1 안전요건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품명 / 유해물질명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 이하		
방염제	사용하지 말 것		
알러지성 염료	사용하지 말 것	–	–
pH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0.5㎍/㎠/week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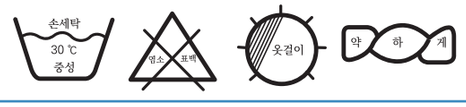
* 면적 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이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2 표시사항

• 개별제품에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아래 사항(예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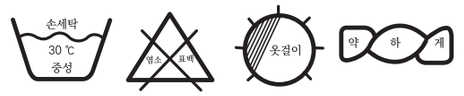
예시1 : 의류 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폴리에스터 100%)
 - 안감(면 100%)
 - 충전재(폴리에스터 100%)
 단,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OO산업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사항)
6.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7. 취급상 주의사항



예시2 : 의류 이외에 섬유제품 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폴리에스터 100%)
 – 안감(면 100%)
 – 충전재(폴리에스터 100%)
 단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OO산업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OO길 1, (02–123–0000)
7. 방염여부(침낭 및 카페트에 한함)
8. 취급상 주의사항



*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해야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개별제품의표시사항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제품(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 신발 등)은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가능하면 됩니다.

• 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상하의로 구분되는 가정용 섬유제품은 제외합니다.

•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제조자명, 수입제품에는 수입자명을 표시합니다.

• 제조국명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함.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23. 양탄자

※정의 및 세부품목

일반 가정에서 일정한 넓이(1m^2) 이상의 바닥깔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털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든 섬유제품에 적용합니다.

종류	제품군
직물제류	단통(Hand–made Carpet), 윌턴양탄자(WiltonCarpet), 액스민스터양탄자(Axminster Carpet), 벨벳양탄자(Velvet Carpet), 평직양탄자
자수물류	터프티드양탄자(Tufted Carpet), 후키드러그(Hooked Rug)
부직포류	모전, 니들펀치드양탄자(Needle Punched Carpet)
편물류	라셀양탄자(Raschel Carpet), 고도양탄자(High pile Carpet)
기타	코오드양탄자(Cord Carpet), 전기식모양탄자, 조유양탄자

1 안전요건

• 겉모양, 파일사의 인발강도, 방염성, 마찰대전성 및 유해물질에 대해 안전요건을 적용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안전요건</th></tr>
<tr><td>겉모양</td><td>1) 구멍난 흠, 찢어진 흠 등이 없어야 하고, 오염, 보수 흠, 전모가공(Shearing) 흠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함
2) 조직이 균일하고 경사줄, 위사단, 파일빠짐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변부가 간지런하고 적정해야 함</td></tr>
<tr><td>파일사의 인발강도</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발강도(kgf)</th></tr>
<tr><td colspan="2">윌턴양탄자류</td><td>0.450</td></tr>
<tr><td rowspan="4">터프티드 양탄자류</td><td>5/32 게이지 이상</td><td>2.5 이상</td></tr>
<tr><td>1/8 게이지</td><td>2.0 이상</td></tr>
<tr><td>1/10 게이지</td><td>1.5 이상</td></tr>
<tr><td>5/64 게이지 이하</td><td>1.0 이상</td></tr>
<tr><td colspan="2">기타제품</td><td>2.0 이상</td></tr>
</table>
</td></tr>
<tr><td>방염성</td><td>
<table>
<tr><th>항 목</th><th>탄화길이(cm)</th><th>잔염시간(s)</th></tr>
<tr><td>경사방향, 위사방향</td><td>10 이하</td><td>20 이하</td></tr>
</table>
</td></tr>
<tr><td>마찰 대전성</td><td>2,000V 이하</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안전요건</th></tr>
<tr><td>유해물질</td><td>
<table>
<tr><th colspan="2">유해물질명</th><th>허용치</th></tr>
<tr><td colspan="2">폼알데하이드 함량 (mg/kg)</td><td>300 이하</td></tr>
<tr><td rowspan="2">염소화페놀류 함량 (mg/kg)</td><td>PCP</td><td>5 이하</td></tr>
<tr><td>TeCP</td><td>5 이하</td></tr>
<tr><td colspan="2">델드린 함량 (mg/kg)</td><td>30 이하</td></tr>
<tr><td colspan="2">유기주석화합물(Tributyltin, TBT) 함량 (mg/kg)</td><td>1.0 이하</td></tr>
<tr><td colspan="2">아릴아민 함량 (mg/kg)</td><td>각각 30 이하</td></tr>
<tr><td colspan="2">방염제 (mg/kg)</td><td>사용하지 말 것</td></tr>
</table>
</td></tr>
</table>

2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개별제품에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하기 사항(예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제품(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 신발 등)은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가능하면 됩니다.

• 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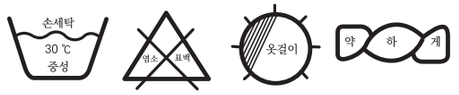
* 상하의로 구분되는 가정용 섬유제품은 제외합니다.

•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제조자명, 수입제품에는 수입자명을 표시합니다.

• 제조국명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함.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 양탄자 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산업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00길 1, (02–123–0000)
7. 방염여부
8. 취급상 주의사항



Ⅲ. 자주하는 질의 답변



제도 일반

Q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 ·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Q2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Q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

▶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죽제품

Q1 인조가죽은 가죽제품에 포함되는데 인조모피도 가죽제품에 왜 포함되지 않나요?

▶ 가죽제품이 아닌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됩니다.

– 인조모피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과 같은 섬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Q2 실내 바닥에 까는 러그의 재질이 인조피혁(PU) 1장에 친환경UV인쇄 후 특정 형태로 재단한 것인데, 인증대상인가요?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폴리우레탄계러그는 가죽제품(인조가죽)으로 분류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가죽제품에 해당합니다.

Q3 사무실 슬리퍼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KC가 어떻게 되나요?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죽제품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가죽재질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기준준수대상 가죽제품(안전기준 부속서3)에 해당됩니다.

합성수지제품

Q1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신청 시 제품의 모양은 동일하나 색상이 다를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색상이 다를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재질, 색상은 동일하나 모양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 동일한 재질, 색상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적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겉모양의 경우는 모양이 다른 제품 모두 적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슬리퍼는 아무런 안전요건 기준이 없나요?

▶ 주 재질의 종류에 따라 안전요건이 달라집니다.

– 주 재질이 섬유 및 섬유의 원료인 경우 안전기준 준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며 가죽이 제품에 60% 이상인 경우 안전기준준수 가죽제품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4 유아용,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합성수지제품에 해당하나요?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기타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 유아용,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구

Q1 인테리어 벽선반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인지?

▶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형 가구(예 :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안전기준준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글라스

Q1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이 탑재된 선글라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선글라스에 해당합니다.

–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성능(자외선 차단 기능 등)과 유해물질 용출량 등이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품을 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블루투스 등 전자적 기능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담당 부서(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용 지팡이

Q1 구조(치수) 항목에서 고무두께 측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지요?

▶ 고무를 몸체에서 분리 후 단면적을 봤을 때, 금속제 걸림쇠가 맞닿는 면에서부터 바닥면(모든 돌기 제외) 부를 측정한 후 결과로 합니다.

Q2 고령자용 지팡이 경우 공급자 적합성에서 안전기준 준수로 변경 되었는데, 시험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 제품시험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Q3 고령자용 지팡이 종류중 접이식과 조절식이 모두 해당하는 제품은 시험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종류가 다르더라도 접이식과 조절식에 해당하는 구조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고령자용 지팡이로 안전기준 준수 시험을 받기 위한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제외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모두 대상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Q1 스프링 매트리스에 폼 또는 라텍스가 상부에 결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내구성 및 수직하중 시험을 해야 하는지?

▶ 내구성,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 구성층이 스프링 매트리스이고 보충재의 역할로서 라텍스 또는 폼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내구성,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산

Q1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닐 재질의 우산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이 되는지요?

▶ 투명한 비닐(EVA재질)로 제조된 우산의 경우, 일회성 용도의 우산은 아니므로 안전기준 준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Q2 골프용 양산 또는 우산 · 양산 겸용으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자외선 차단율 표시가 필수인지 여부.

▶ 골프용 우산 또는 양산 겸용 제품의 정의는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살의 길이가 해당 기준보다 긴 경우에만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함.

접촉성 금속 장신구

Q1 성인용 손목시계인데 시계줄이 가죽이라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및 가죽제품에 모두 해당됩니다.

– 손목시계의 경우 시계몸체의 경우는 피부접촉부위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 버클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접촉되는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품목 '접촉성 금속 장신구'기준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죽 시계줄의 경우는 동일한 법에서 '가죽제품'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의 안전기준에 만족된 제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Q2 성인용 헤어밴드인데 외부는 천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금속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KC 인증 대상이 되나요?

▶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헤어밴드 내부에 금속대가 있고 그 외부전체를 섬유로 감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금속이 없는 제품으로 판단되며, 이런 제품의 경우는 KC인증대상 제품이 아닙니다.

Q3 은으로 만든 장신구도 대상인가요?

▶ 은의 함량이 92.5% 이상인 경우에는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도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는 경우 어떤 시험항목을 진행하나요?

▶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는 금속제품이 아니므로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섬유제품

Q1 합성수지제 신발은 어떤 시험항목이 진행되나요?

▶ pH, 폼알데하이드 시험항목이 적용됩니다.

Q2 형광증백제와 관련한 시험항목은 없나요?

▶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안전요건에 형광증백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카페트, 러그, 양탄자 제품의 뒷면(backing)재질이 고무제, 라텍스(합성고무, 천연고무)등과 같은 섬유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제품에 한글표시사항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나요?

▶ 카페트, 러그, 양탄자 제품이 파일직물인 경우 뒷면 재질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고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Q4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치수의 범위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 치수를 어떻게 표시해야하는 건가요?

▶ 각 섬유제품에 있어서 KS K 0051(성인여성복의 치수)표준에 따라 치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표시 방법에는 기본 신체 치수(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에 대한 표시와 제품 치수(제품의 실제 치수)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기본 신체 치수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5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내용 중 표기사항을 보니 제조년월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침구류의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에 제조년월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면 최종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별도표기’로 표시하여도 무방한가요?

▶ 가능합니다.

– 제품의 라벨에 제조연월을 기재하신 경우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중복하여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별도표기’로 표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6 모자에 넣을 케어라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케어라벨을 전문 영어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국문/영문 둘 다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 가정용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Q7 면마스크 (성인용) KC 인증 기준, 절차, 비용 문의드립니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몰’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 문의하신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며, 시험절차 및 비용은 시험가능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방한용 마스크는 가정용섬유제품 중 중의류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합니다.

– 또한, 시험절차 및 비용은 가정용 섬유제품 시험이 가능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IV. 시험기관 안내

1. 시험기관별 검사 품목

대상품목	시험기관						
	KTL	KCL	KTC	KTR	KATRI	FITI	KOTITI
가죽제품		O			O	O	O
합성수지제품('20.10.22.시행)		O	O	O	O	O	O
가구		O			O		O
간이 빨래걸이		O					
선글라스		O	O		O	O	O
안경테		O	O		O	O	O
텐트					O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O	O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O					
고령자용 목욕의자		O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O		
반사 안전조끼						O	
스테인레스 수세미				O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O			O		
우산 및 양산		O	O		O	O	O
휴대용 경보기	O						
접촉성 금속 장신구		O	O	O	O	O	O
벽지 및 종이장판지					O	O	
가정용 섬유제품		O			O	O	O
양탄자					O	O	

※ 가구 가운데에서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가구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입니다.

* 고령자용 신발 : 기준에 따른 미끄럼 저항시험이 가능한 기관이 없음
* 고령자 위치추적기 : 민간기관(반복자유낙하시험 : KCTL, 유해물질 : 인터텍)에 의뢰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관이 없음

2. 시험기관 문의처

시험기관	품목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휴대용 경보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02-860-1114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안경테, 고령자용 지팡이, 접촉성 금속 장신구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고객지원실	031-428-7345
	우산 및 양산 (구조안전성)		031-343-8884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741
	가구, 침대 매트리스,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85	032-460-5155
	간이 빨래걸이, 고령자용 지팡이		032-728-5560
	우산 및 양산		032-728-5553
	선글라스, 안경테		032-728-5579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KTR)	합성수지제품, 스테인레스 수세미, 접촉성 금속장신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123~8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KATRI)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 가구,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물안경,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촉성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FITI시험연구원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마곡동)	02-329-8009
	가죽, 합성수지제품, 가구, 선글라스, 안경테, 반사 안전조끼,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52
KOTITI시험연구원	가죽, 합성수지제품, 가구, 선글라스, 안경테,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02-3451-7076 02-3451-7119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V. 시험지원 안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이 많이 취급하는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대해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구매하여 건강한 유통 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시험비용 지원
 ⇒ 서울시 5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 소상공인 0%
 (단, 1개 기업당 500만 원 내외)
- **운영절차** : 상담 · 접수 → 제품검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개별통보(시험성적서)
- **문 의 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

[경기도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섬유 관련 중소기업
- **지원사항**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전요건 시험비용 지원
 ⇒ 경기도 75% 지원, 소상공인 25%(단, 1개 기업당 500만 원 내외, 지원비 소진시까지)
- **운영절차** : 방문 및 우편, 택배 등으로 지원 접수
- **문 의 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시험분석평가팀(☎031-860-0931)

[부산시 신발제품의 시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신발산업 영위기업
- **지원사항** : 신발(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시험비용 지원
 ⇒ 부산시에서 시험비용의 100만 원 이내 지원(1개 기업당 10개 품목 내외)
- **운영절차** : 지원 신청한 기업 중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문 의 처** : 한국신발피혁연구원(☎051-605-3236)

* 정부와 지자체는 대상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국가기술표준원

기획 · 편집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디자인 · 인쇄 디자인페이지 02-2285-5278